

## 제28회 법행 제1차시험 확정정답 변경 및 추가합격자 명단

### 1. 내용

형법과목 1책형 3번(2책형 3번) 문항의 확정정답을 「정답없음」 으로 변경

『실제 문제 예』 -1책형 3문항(2책형 3문항)

**【문 3】** 다음은 형법상의 집행유예에 관한 기술이다. 그 중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?(판례에 의함)

- 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.
- ㉡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.
- ㉢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(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)에 대하여는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나,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(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)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1개의 죄에 대하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.
- ㉣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결정사유(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사실)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다만 그 결정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.
- 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.

① ㉠, ㉡, ㉢, ㉣

② ㉠, ㉡, ㉣

③ ㉠, ㉢, ㉣

④ ㉠, ㉢

⑤ ㉡, ㉢

**정답** 정답없음

2. 추가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성명	응시번호	성명
<b>【법원사무직렬 : 10명】</b>		<b>【등기사무직렬 : 1명】</b>	
311127	황혁주	410269	임종미
311262	홍주현		
311278	추영은		
311640	이선미		
311738	김태욱		
311925	이남철		
312223	권태형		
312555	김경민		
314265	이유진		
350007	양동성		